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5. 13. 제 천 시 장
- 나. 회 부 일 자 : 2009. 5. 18.
- 다. 상 정 일 자 : 2009. 5. 20.(제1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박춘일)

가. 제안이유

《취득재산 : 1 건》

○ 테니스장 조성 편입부지 취득

- 신동 산 27번지 자원관리센터 주민편의 시설부지에 테니스장 조성 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사유지를 취득코자함
 - ▶ 토지 취득 임야 82,612㎡

나. 주요내용

《취득재산》

(단위: ㎡/천원)

구 분	취 득 재 산			추정가격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토지1필지		82,612	372,000	
취 득	제천시 신동 산28번지	임	82,612	372,000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홍완식)

【 법적검토 】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은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관련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음

【 행정적 검토 】

-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2009년도 체전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현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7면으로 정구장과 함께 사용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고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신동 산 27번지 자원관리센터 잔여 부지(27,200㎡)를 활용 테니스 전용구장을 시설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테니스 전용구장 조성의 타당성 및 조성규모(14면)의 적정성, 사유지 취득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답변자 : 회계과장 최춘일)

- m'당 얼마씩 감정한건지?(박성하 의원)
: 대장가격으로 m'당 4500원 정도임.
- 만약에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하게 되면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조덕희 의원)
: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면서 그 일대를 체육시설까지 병행해서 계획을 세웠음. 축구장도 그 일대에 조성되어 있고 체육시설타워를 조성하기 위해서 테니스장까지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음. 테니스장 회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러는데 일단 축구회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으며, 단지 거리상 가지고 불편하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음.
- 추경 언제 할 예정인지? 이 사업 예산을 충분한지?(박성하 의원)
: 7월경에 하려고 구상중임.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다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음.(김석운 전략기획실장)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1부. 끝.